

<별지 제3호 서식>

시민의 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 통보
(제14조제2항 관련)

- 1. 감사청구사항
 - 가. 청구인 : 대표자 :
 - 나. 청구일자 :
 - 다. 청구요지 :
- 2. 감사개요
 - 가. 감사기간 :
 - 나. 감사대상기관 :
 - 다. 감사반편성 :
 - 라. 감사방법 :
- 3. 감사결과
 - 가. 중점 감사사항(청구인의 주장사항 등)
 - 나.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 다. 건의·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 라.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종합의견
 - 마. 기타 특기사항

서울도시가스사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은 시장이 회의 개최시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동조동항제1호의 “시의 경제관련 실·국장”을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

제5조중 “상공과장”을 “산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64
----------	-----

2000. 5.
기획경제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4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의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00년 4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산업경제국장 임재오)

가. 제안이유

지역별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